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0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

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또

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에 대한 승인 의무 부여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시장도매인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시장도매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재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도매시장 외에도 시장도매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행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원하더라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함.

현행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내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규정에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장관, 시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도매시장의 경우 사실상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 시·도지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타 유통종사자인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비교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시장도매인의 수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공시내용 확대 및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 부여

최근 기후위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그 가격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목격되고, 소비자가격에 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공시제도의 목적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가하고,

②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물량, 출하자 수취가격 및 유통비용을 공시내용에 추가하며,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

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출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임.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존에 부령으로 정하던 공시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공시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기존에 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공시 내용에 유통비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으로 이어지는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도매 거래가격-출하자 수취가격), 즉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의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의 상당수가 경매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이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주관하고 있지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정안의 취지가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가격결정 의무 대신 노력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은 도매시장법인에게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생산원가’와 ‘합리적 가격 결정’의 판단이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생산원가의 결정방식이나 합리적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조정

현재 도매시장 거래제도에서 농산물 등의 수집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① 출하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② 이를 상장하여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매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① 현재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율의 최고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 청과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기존에 비하여 인하하되, ③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에서 1%p를 더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보고, 도매시장법인이 지나친 위

탁수수료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제 생산자들의 수취가격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인하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 제도에서 출하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출하자에게 대금을 즉시 결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하역비 등을 출하자, 중도매인, 하역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탁수수료를 인하에 따른 전국적인 영향이 단순히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감소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내 출하자나 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매시장 내 영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